

고선미 세법

기출문제집

정오표

고선미 세법 기출문제집 정오표(국세기본법)

p.3

문제 03. 해설 수정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의 목적 :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법인세법의 목적 :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4. 소득세법의 목적 :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목적 :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11

문제 19. 정답 수정 ④ → ③

p.14

문제 24. 해설 ① 수정

- 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p.22

문제 05. 보기 ① 수정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p.24

문제 08. 해설 수정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대법원2010두7796, 2012.11.29.)

p.30

문제 20. 해설박스 안 밑에서 2줄

제척기간 기산일 : 2017.4.1., 제출기간 만료일 : 2024.3.31.

p.32

문제 24. 보기 ② 수정

- ②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p.33

문제 25. 보기 ②, ④ 수정

- ②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 ④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개정)

p.33

문제 26. 보기 ③ 수정

- ③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그 주주 등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p.36

문제 32. 해설 수정 (개정)

사업양수인(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에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한함)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다.

p.37

문제 33. 해설 ③ 수정 (개정)

- ③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p.38

문제 35. 보기 박스 안 ㉠ 수정 (개정)

-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p.40

문제 38. 보기 ㉔ 수정

- 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p.41

문제 01. 보기 박스 안 ㉒ 수정 (개정)

- ㉒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p.47

문제 04. 문제 위 기출표시 수정

2014년 9급 국기 5.2. ㉔ 2개월 → 3개월(헌법)

p.50

문제 09. 해설 ㉑ 수정 (개정)

- ㉑ 미납세액·과소납부한 세액 × 3% + 미납세액·과소납부한 세액 × 2.5/10,000

p.52

문제 13. 해설 밑에 다음 내용 추가

-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100% 감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 (개정)
 - ㉑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㉒ 수용, 도시계획 결정, 기타 법률 규정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㉓ 행위 당시에는 세법상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

p.55

문제 05. 해설 가장 밑에 줄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p.58

문제 04. 보기 ④ 수정 (개정)

-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p.60

문제 07. 보기 ③ 수정

- ③ 심판청구의 불복청구서가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p.61

문제 09. 해설 수정

원칙 : 집행부정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예외 : 집행 정지	다음과 같이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등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함 (개정) ① 불복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공매의 경우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음 ㉡ 다만,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매각 가능

p.63

문제 02. 해설 수정

- * 중복조사금지원칙 :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음
- ① 세무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③ 2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④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⑥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⑦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⑧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개정)
 - ⑨ 국제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⑩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다만, 처음의 세무조사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제외)

p.65

문제 05. 문제 박스 안 ㄹ. 및 해설 안 ㄹ. 수정 (개정)

문제 박스 안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안

ㄹ.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p.68

문제 11. 보기 ②, ③ 및 해설 수정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 →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통지하지 않음

p.69

문제 13. 해설 수정 (개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 폐업한 경우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② 불복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종결시

③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p.71

문제 16. 보기 ④ 수정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p.71

문제 17. 보기 ㉔ 수정

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p.72

문제 19. 해설 밑에서 2번째 줄 수정

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

p.73

문제 20. 보기 ① 수정

①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때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선미 세법 기출문제집 정오표(국세징수법)

p.78

문제 02. 보기 ② 수정 (개정)

- ② 미과세된 자로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85

문제 04. 해설 ② 수정 (개정)

- ② 1천분의 15 → 1만분의 75

p.86

문제 05. 해설 ③ 수정 (개정)

-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p.94

문제 21. 보기 ① 수정

-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고선미 세법 기출문제집 정오표(법인세법)

p.123

문제 10. 보기 ① 수정

① 출자임원-배당

p.130

문제 10. 정답 수정

④ → ③

p.137

문제 03. 보기 ③ 수정 (개정)

③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손금으로 한다.

p.151

문제 05. 해설 수정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임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p.159

문제 05. 보기 ③ 수정 (개정)

③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손금으로 한다.

p.166

문제 04. 문제 두 번째 줄 수정

8,000,000원(이 중 2,2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 세무조정과~

p.192

문제 01. 보기 ② 수정 (개정)

- ②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함)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193

문제 03. 보기 ③ 수정 (개정)

- ③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함)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선미 세법 기출문제집 정오표(소득세법)

p.204

문제 15. 문제 수정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205

문제 16. 해설 ① 수정

- ① 원천징수하는 거주자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p.218

문제 26. 모두 수정 (개정)

26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20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 ① 0원 ② 1,080원 ③ 1,350원 ④ 2,700원

원천징수세액 = (일지급액 - 150,000원) × 6% × (1 - 55%) = 1,350원

정답 ①

p.223

문제 37. 보기 ② 및 해설 수정 (개정)

② 6,800,000원

구분	기타소득금액	
㉠ 어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10,000,000 - Min(실제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60% = 6,000,000)	4,000,000
㉡ 복권 당첨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
㉢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0 - Min(실제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60% = 1,200,000)	800,000
㉣ 슬롯머신에 의한 당첨금품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및 과세최저한 (건별 200만원 이하)	-
㉤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총수입금액 200만원 - 필요경비 0	2,000,000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		6,800,000

p.223

문제 38. 해설 수정 (개정)

*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금품
-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저작자 외의 자가 수령하는 저작권사용료 제외)
- ㉣ 산업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대여대가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p.224

문제 39. 문제 수정 (개정)

기타소득 중 해당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p.238

문제 05. 보기 ㉢ 수정 (개정)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가 3명일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p.241

문제 03. 보기 ㉡ 및 해설 ㉡ 수정

㉡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7세인 장남, 2019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 기본공제 30만원+출산입양공제 70만원=100만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p.248

문제 09. 해설 ② 수정 (개정)

- ②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고, 별거 중이거나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p.249

문제 10. 해설 수정 (개정)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하며, 거주자가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p.254

문제 20. 해설 수정 (개정)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다.

* 비과세 양도소득

-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고가주택은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1세대 1주택
 -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 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

p.261

문제 01. 보기 ③ 수정 (개정)

- ③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함)

고선미 세법 기출문제집 정오표(부가가치세법)

p.281

문제 07. 해설 수정 (개정)

여객운송용역 중

- ㉠ 면세 대상 : 시내버스·지하철·일반고속버스 등
- ㉡ 과세 대상 : 항공기·전세버스·택시·우등고속버스·자동차대여업·고속철도·특수자동차·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삼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p.307

해설 ③ 수정

- ③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도발생일이 2019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p.309

문제 04. 해설 수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109)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개인사업자)	6/106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그 외	2/102

p.310

문제 06. p311 문제 08. 해설 수정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산세는 부과됨).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산세는 부과됨). (개정)

p.320

문제 10. 보기 ② 수정

- ② 사업자 관할세무서장 등은 결정 또는 **결정**을 할 경우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을 때에는 추계할 수 있다.

p.336

문제 07. 해설 수정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증여세 납세의무

구분	납세의무자
원칙 : 수증자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명의신탁재산 : 실제소유자 (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포함)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실제소유자가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음
이중과세방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p.337

문제 08. 보기 ③ 수정 (개정)

③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함)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p.338

문제 10. 보기 ④, 해설 ② 수정

④ 상속세의 물납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해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건부	①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무조건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②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개정)

p.341

문제 01. 해설 수정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구분	평가액
대상 재산	①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② 양도담보재산 ③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④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개정)
평가액	평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함 1. : Max(①, ②)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② 해당 자산(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이 담보하는 채권액·전세금 등

고선미 세법 기출문제집 정오표(part8. 기출문제(5개년))

p.353

문제 01. 문제 박스 안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p.359

문제 18. 보기 ③

③ 부도발생일이 2018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p.363

문제 12. 보기 ④

④ **상속세**의 물납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p.382

문제 03 보기 ④ (개정)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p.391

문제 06. 보기 ② (개정)

②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7세인 장남, 2019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p.408

문제 05. 보기 ②, ③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p.410

문제 10. 다음과 같이 수정 (개정)

10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20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 ① 0원 ② 1,080원 ③ 1,350원 ④ 2,700원

p.423

문제 02. 해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산세는 부과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산세는 부과됨). (개정)

p.424

문제 10. 해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구 분	평 가 액
대상 재산	①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② 양도담보재산 ③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④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개정)
평가액	평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함 1. : Max(①, ②)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② 해당 자산(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이 담보하는 채권액·전세금 등

p.427

문제 01 해설 안

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의 사항을 통지해야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p.433

문제 12. 해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건부	①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무조건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②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정)

p.435

문제 01. 해설 가장 밑에 줄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p.439

문제 02. 해설 (개정)

사업양수인(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에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한함)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다.

p.441

문제 17. 해설박스 안 밑에서 2줄

제척기간 기산일 : 2017.4.1., 제출기간 만료일 : 2024.3.31.

p.448

문제 06. 해설 ②

- ② 기본공제 30만원+출산입양공제 70만원=100만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p.451

문제 05. 해설 밑에서 2번째 줄 수정

거나 결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p.454

문제 01. 해설 ① (개정)

① 미납세액·과소납부한 세액×3%+미납세액·과소납부한 세액×2.5/10,000

p.454

문제 05. 해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 →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통지하지 않음 (개정)

p.455

문제 10. 해설 (개정)

원천징수세액 = (일지금액 - 150,000원) × 6% × (1 - 55%) = 1,350원

p.455

문제 11. 해설 ③ 수정 (개정)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p.457

문제 04. 해설 (개정)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 ① 폐업한 경우
- 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② 불복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종결시
- ③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p.457

문제 06. 정답

④ → ③